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이대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03
----------	-------

발의년월일 : 2022. 11. 14.
발의자 : 이대구 의원 외 7명

1. 제정이유

- 안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과 지급대상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7조)
-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0조)
-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비용추계서)

6. 입법예고 결과(의견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붙임4(부서검토의견)

붙임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 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민기본소득” 이란 경기도와 안산시가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4. “안산화폐”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산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산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① 농민기본소득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 ②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화폐로 지급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기본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농민기본소득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민기본소득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대상) ① 농민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에게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나. 시장이 제8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농민으로 인정한 사람

2. 안산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안산시(연접시군 포함)에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람

2. 농민기본소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 농민기본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안산시의회 의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 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실제 거주여부, 농업생산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지급대상 명부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체 없이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자격변동에 관한 고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급주기 및 지급액)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주기와 지급금액은 안산화폐 지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농민 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자체 없이 농민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 교부 ·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9-103호
----------	---------

제안년월일 : 2023. 3. 28.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내역 및 경기도 농민기본 소득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세분화 함.
(구위원회, 시위원회)

□ 주요골자

- 농민기본소득 구위원회, 시위원회 구분 설치 (안 제8조 ~ 제10조)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이하 “구”라 한다), 시청(이하 “시”라 한다)에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에는 농민기본소득 구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

2.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

② 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제1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농업분야에”를 “농업분야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시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 <u>안산시 농민기본 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1.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u></p> <p><u>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u></p> <p><u>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8조(농민기본소득 위원회) ① <u>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이하 “구”라 한다), 시청(이하 “시”라 한다)에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u>구에는 농민기본소득 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③ <u>시에는 농민기본소득 시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u>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u></p> <p><u>1.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u></p> <p><u>2.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생 산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결과를 제출</u></p> <p>② <u>시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u></p> <p><u>1. 농민기본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u></p> <p><u>2.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u></p> <p><u>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u></p>

<신 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1. 농민기본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안산시의회 의원

나. (생 략)

제10조(구위원회의 구성) ① 구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위원회의 구성) <삭 제>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 국
(소)장 -----

2. -----

가.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현행과 같음)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신 설>

① ~ ③ (생략)

제11조 ~ 제15조 (생략)

다. 농업분야에 -----

③ 제1항제2호나목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 까지와 같음)